의안번호	제394호
의결연월일	2021.10.18.

-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10. 08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: 2021. 10. 08.

○ 상 정 일 자: 2021. 10. 18.

제274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축산과장 : 원길연)

가. 제안이유

○ 축산업 육성과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,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관련 단체 및 종사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축산업 발전 지원 기본방향(안 제4조)
-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대상(안 제5조)
- 지원 제한(안 제6조)
- 축산업 지원 사업의 신청(안 제7조)
- 축산업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(안 제8조) 등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완호)

- 본 조례는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,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축산관련 단체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.
- 「축산법」제3조에서 축산발전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.
- 본 조례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장비 지원과 축산물 유통, 말, 사슴, 꿀벌 등 육성 등을 통해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・답변 요지

○ 생 략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